## 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자치행정과)

제출일 : 2022. 11.

## 1. 제안이유

○ 2023.1.1. 시행 예정인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답례품의 종류, 답례품 선정위원회 설치·운영,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, 답례품 비용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조~제6조)
-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기금의 관리 및 운용, 기금의 사용목적, 기금운용관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~제10조)
-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·운영 등에 관한사항 (안 제11조~제14조)
-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~제16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강환천)

-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남시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검토결과, 안 제12조제4항에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, 각종 위원회의 난립 방지를 위해 제정된 「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